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952호
- 다. 제출일자 : 2019. 8. 7
- 라. 회부일자 : 2019. 8. 13

### 2. 제 안 사 유

-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3.1. ~ 2023.2.28.)
-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20년 소요예산 : 4억원(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5조(관련업무 위탁) ① 지자체장은 관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13조

제13조(신청 자격)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편성 : 4억원(국비1억원, 시비3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제17조의3에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에 따라 201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15년)」을 통해 2020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 센터 설치를 밝힌 바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8개 시·도만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2)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 현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친환경 소비자 양성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난 3월,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기 추진 과정	향후 추진 계획
- '19.03월 '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19.08월 동의안 상정 및 심의
- '19.03월 관련 조례 개정	- '19.10월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04월 토론회 개최 <sup>1)</sup>	- '20.01월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19.06월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03월 위·수탁협약 체결
	- '20.04월~ 민간위탁 운영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도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및 조례에

1) 지원센터 역할, 민간영역에서 녹색구매 운동사례, 서울시 정책연계, 녹색상품 기업연계 방안 등 제시

서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서울시 사무로 분류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따라 서울 지역 내 활동 중인 시민단체 등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2017.7월)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제3항(2019.3.28 신설)에서도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8개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지원센터 위탁 현황〉

구분	경기 안산센터	부산 센터	제주 센터	충북 센터	대전 센터	세종 센터	광주 센터	인천 센터
운영 주체	경기도 안산시	부산 광역시	제주특별 자치도	충청북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광주 광역시	인천 광역시
위탁 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 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전주부 모니터링 봉사단	세종지속 가능발전 협의회	광주소비자 공익네트 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4)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환경부 지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정액)과 시비 3억원

(국비 이상)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등 사업비(36.1%), 인건비(34.4%), 운영비(28.3%)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설치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 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총 5명이고 전원 상근직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비상근직원 없이 상근직원으로만 충원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지원센터 운영 인력 현황〉

구분	경기 안산센터	부산 센터	제주 센터	충북 센터	대전 센터	세종 센터	광주 센터	인천 센터
운영 인력	상근 2명, 비상근 3명	상근 2명, 비상근 4명	상근 3명, 비상근 0명	상근 3명, 비상근 2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0명	상근 3명, 비상근 2명

- 지원센터 규모는 직원 사무실과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등을 감안하여 165㎡ 이상<sup>2)</sup>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는 서울시 소유·관리 건물(서울혁신파크, 새활용플라자<sup>3)</sup>) 또는 민간 건물 임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특성상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현재 설치·운영 중인 지원센터 규모는 40㎡(인천센터) ~ 276.6㎡(대전센터) 수준임.  
 3)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새활용플라자(성동구 용답동)

## [참고자료]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토론회 결과보고

#### □ 개최결과

- 일 시 : '19. 4. 11.(목)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 토론회 주요내용

- 지역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
  - 직접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지역 네트워크 주체들과 협약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직접 프로그램 기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옴
  - 공공분야의 녹색구매보다는 민간분야의 활성화로 초점 변경이 필요한 시점임
  - 나들가게와 연계하여 녹색매장으로의 지정을 지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도움 및 지역에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임
- 민간영역에서의 녹색구매 운동사례
  - 녹색구매네트워크(GPN)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와 관련된 각 경제주체가 녹색 구매 생산·소비를 촉발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함
  -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녹색상품을 추천하여 녹색상품 인식개선 및 친밀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녹색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서울시 정책연계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기능을 취사선택하여 시민실천(시민소비생활), 녹색상품혁신(기업)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소비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녹색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녹색상품 기업연계
  - 녹색제품 범위에 환경보건 분야의 제품도 포함시켜 홍보 및 지원해야 함
  - 환경표지 인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활성화 시켜야 함
- 기타의견
  - 이미 기반을 갖춘 유통업체를 발굴하여 친환경상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 전달 및 지원하는 것도 녹색제품 판로에 도움이 될 것.